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23
----------	-------

발의연월일 : 2018. 2. 2.

발의자 : 조승래 · 전재수 · 노웅래
안민석 · 오영훈 · 김민기
임종성 · 김성수 · 고용진
유은혜 · 신용현 · 추혜선
신경민 · 박홍근 · 이원욱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신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및 학생·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 략) <u><신 설></u></p> <p>8. · 9. (생 략)</p> <p>② · ③ (생 략) <u><신 설></u></p>	<p>제5조(정관)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 <u>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u></p> <p><u>9. · 10.</u>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u></p> <p><u>1.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u></p> <p><u>2. 교육, 연구 및 학생·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u></p> <p><u>3.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u></p> <p><u>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u></p>

	<p>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 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의원의 임기, 자료 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p> <p>④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u>제14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생 략)</u>	<u>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u>
<u>제14조의3(학력의 인정) (생 략)</u>	<u>제14조의4(학력의 인정) (현행 제14조의3과 같음)</u>